

고 시

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제2020-47호

삼호가든맨션3차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

우리구 반포동 32-8번지일대 삼호가든맨션3차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이 있어 『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』 제50조제1항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하고, 같은 법 제5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0. 03. 19.

서 초 구 청 장

1.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

가. 정비사업의 종류 : 주택재건축정비사업

나. 정비사업의 명칭 : 삼호가든맨션3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

2.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

가. 정비구역의 위치 :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32-8번지 외 2필지

나. 정비구역의 면적 : 31,228.80㎡

3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
가. 사업시행자의 성명

: 삼호가든맨션3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(조합장 윤병기)

나. 사업시행자의 주소

: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4길 55, 305호(서초동, 중앙서초프라자)

(☎ 02-591-0300)

4.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: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82개월

5. 사업시행변경인가일 : 2020. 03. 17.

6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:
해당 없음

7. 건축물의 대지면적·건폐율·용적률·높이·용도 등 건축계획에 관한사항

가. 대지면적 : 30,983.6㎡ 나. 건 폐 율 : 17.96%

다. 용 적 률 : 299.50% 라. 최고높이 : 106.95m

마. 용 도 : 공동주택(아파트) 및 부대·복리시설

8. 주택의 규모 등 주택건설계획 : 지하4층 / 지상35층, 아파트 6개동 848세대

공 급 구 분	주택의 형 태	세대수	주택규모별 세대수(전용면적 기준)			
			60㎡ 이하	60㎡ 초과 ~ 85㎡ 이하	85㎡ 초과 ~ 115㎡ 이하	115㎡ 초과
계	아파트	848	274	403	49	122
분 양	아파트	720	146	403	49	122
임 대 (재건축소형주택)	아파트	128	128	-	-	-

9.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
귀속에 관한 사항

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		새로이 설치할 정비기반시설			
종류	규모	종류	규모	시행자	비용부담자 및 부담내용
-	-	도로	245.2㎡	삼호가든맨션3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	시행자(조합) 부담 / 새로이 설치 후 관리청에 무상 귀속

10. 사업시행변경내용

가. 사업시행기간 변경(10개월 연장(사업시행인가일~72개월 →사업시행인가일~82개월))

나. 단위세대 창호 높이 변경, 보조주방창 설치, 일부 세대 내부구획 변경 등

11. 의제 처리사항 :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57조제1항 각 호의 해당 관계법규

12. 관계도서는 서초구청 주거개선과(☎ 2155-7341)에 비치하고 토지등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